

차 용 증

채권자 _____ (이하 "갑")와 채무자 _____ (이하 "을")는 아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차용증을 작성한다.

구분	갑 (채권자)	을 (채무자)
성명	_____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_____
주소	_____	_____
연락처	_____	_____

제1조 (차용금액)

을은 갑으로부터 금 _____ 원整을 차용하고, 갑은 이를 을에게 대여한다.

제2조 (차용일자)

위 금원의 차용일자는 20____년 ____월 ____일로 한다.

제3조 (변제기일 및 방법)

을은 위 차용금 전액을 20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갑이 지정하는 계좌(_____)로 입금하여 변제한다.

제4조 (이자)

- ① 이자율은 연 _____%로 한다.
- ② 을은 매월 ____일에 이자를 갑에게 지급한다.
- ③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제5조 (지연손해금)

을이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 (기한이익의 상실)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갑은 즉시 잔여 차용금 전액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1. 이자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2. 을에 대하여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3. 을의 재산에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 경우

제7조 (비용부담)

채권 회수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소송비용, 공증비용 등)은 을이 부담한다.

제8조 (관할법원)

이 차용증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차용증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갑 (채권자) : _____ (인)

을 (채무자) : _____ (인)